

1. 개정이유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개산계약 금액조정 사유 보완
- 나. 장기계약 체결기준 마련
- 다. 장기계약에서의 연차별 금액 확정 기준 마련
- 라. 계약보증금 반환기준 마련
- 마. 기타 방위사업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 보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0. ~ 4.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0조 및 제61조”를 “제61조, 제61조의3, 제61조의6, 제61조의7”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61조의6 제4항의 수입가격과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설계변동,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을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술변경, 추가요구사항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경쟁으로 체결하는 개산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정금액은 개산계약금액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다음 각 목에 따

라 산정하되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하는 경우 조정한다.

가. 품목조정률= $\Sigma(\text{등락폭} \times \text{수량}) \div \text{계약금액}$

나. 등락폭= $\text{계약단가} \times \text{등락률}$

다. 등락률 = $\frac{\text{물가변동당시가격} - \text{입찰당시가격}}{\text{입찰당시가격}}$

2. 제1호 나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세부 품목 및 비목 포함)상의 단가를 말한다.
3. 입찰당시가격은 개산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원가계산서를 구성하는 각 품목 및 비목별 가격을 말하며, 개산원가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각 품목 및 비목별 금액을 계약률로 나눈 가격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률은 가격평가 시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4. 제3호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노임단가, 제비율 등은 입찰당시 시행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동에 따라 실제 발생된 비용을 기준으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하되, 노임단가, 제비율, 작업시간 등 물가변동과 관련 없는 비목은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동일한 수치를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기납대가 또는 기성대가를 포함하며, 착수금·중도금 지급 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검토기간 등 행정소요를 고려하여 정산시점에 조정요건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일괄 조정하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개산계약금액의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7제4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정부의 시책변경, 계약금액의 3% 미만인 해당하는 물가변동 등 계약상대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37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절 장기계약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61조의제3항에 따른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0조(계약보증금 반환) 계약담당공무원은 연차별 납품(또는 기성)처리를 분명히 정한 장기계약에 있어 연차별 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41조(계약금액 결정) 장기계약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하고, 당해연도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연차별 금

액을 조정 및 확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었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61조, 제61조의3, 제61조의6, 제61조의7----- ----- -----.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61조의6 제4항의 수입가격과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4조의2(개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제4절·제4절의2·제5절·제6절·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기간 중 설계변동,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제4조의2(개산계약금액의 조정) ① ----- ----- ----- ----- ----- -- <u>물가변동, 설계변경, 기술변경, 추가요구사항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u> ----- -----

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른 개산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 시점까
지의 실제발생원가 자료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3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만 할 수 있다.

<신 설>

--. <단서 삭제>

② 경쟁으로 체결하는 개산계약
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
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정금액은 개산계약금액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되 품목조정
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하는
경우 조정한다.

가. 품목조정률=Σ(등락폭×수
량)÷계약금액

나. 등락폭=계약단가×등락률

2. 제1호 나목의 계약단가는 계
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
하는 산출내역서(세부 품목
및 비목 포함)상의 단가를 말
한다.

3. 입찰당시가격은 개산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원가계

산서를 구성하는 각 품목 및
비목별 가격을 말하며, 개산원
가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각 품목 및
비목별 금액을 계약률로 나눈
가격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
률은 가격평가 시 기준이 되
는 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4. 제3호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노임단가, 제비율 등은 입찰당
시 시행되는 기준으로 적용한
다.

5.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
동에 따라 실제 발생된 비용
을 기준으로 「방산원가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
칙」에 따라 산정하되, 노임단
가, 제비율, 작업시간 등 물가
변동과 관련 없는 비목은 산
출내역서에 반영한 동일한 수
치를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
용대가는 기납대가 또는 기성

대가를 포함하며, 착수금·중도금 지급 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의 조정은 검토기간 등 행정
소요를 고려하여 정산시점에
조정요건 성립 여부를 판단하
여 일괄 조정하되, 제1항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4(계약금액의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7제4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정부의 시책변경, 계약금액의 3% 미만에 해당 하는 물가변동 등 계약상대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12절 장기계약

제39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시행
령 제61조의제3항에 따른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0조(계약보증금 반환) 계약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당공무원은 연차별 납품(또는
기성)처리를 분명히 정한 장기
계약에 있어 연차별 이행이 완
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
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41조(계약금액 결정) 장기계약
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총 계약
금액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하고, 당해연도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연차별 금액을 조정
및 확정한다.